

회계학원론 제11장

채권과 채무 :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주요 주제>

-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 대여금과 차입금
 - 미수금과 미지급금
 - 선급금과 선수금
 - 가지급금과 가수금
 - 예수금
 - 상품권
-
-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 수취채권의 손상차손[대손상각]

채권과 채무

수취채권·기타채권[A]	지급채무·기타채무[L]
대여금	차입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금	선수금
선급비용	선수수익
가지급금	가수금

- ※수취채권: 기업활동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 ※지급채무: 기업활동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은 매출채권으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매입채무로 통합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함
-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가계정으로서,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없음
- ※장단기 구분은 장기대여금, 단기대여금,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과 같이 표시함
- ※금융자산: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비금융자산: 선급금, 선급비용, 가지급금**
- ※금융부채: 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비금융부채: 선수금, 선수수익, 가수금**

금융상품[supplement]

금융상품의 범주 (K-IFRS 제1039호, 2011.11.18.)	
금융자산[A]	금융부채[L]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만기보유금융자산	그밖의 부채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 **금융상품**의 정의: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K-IFRS 제1032호, 2012.05.24.)

※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K-IFRS 제1039호, 2011.11.18.):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active market)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다만, 다음의 비파생금융자산은 제외한다. (1)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과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2) 최초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3)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대여금과 차입금

예제 11-9

※ 교재 [예제 11-09]

(1) 광주주식회사로부터 차용증서를 받고 2개월간 현금 60,000원을 대여하다.

(차) 단기대여금 60,000 (대) 현 금 60,000

(2) 위 대여금 만기일이 되어 광주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5,000원을 수표로 받다.

(차) 현 금	65,000	(대) {	단기대여금	60,000
			이자수익	5,000

(3) 서울주식회사에 차용증서를 주고 3개월간 현금 80,000원을 차입하여 곧 당좌 예입하다.

(차) 당 좌 예 금 80,000 (대) 단기차입금 80,000

※ **대여금과 차입금**: 현금의 장단기 대여 또는 차입에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 대여금과 차입금 중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회수 또는 지급하는 것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12개월 이후에 회수 또는 지급하는 것은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

예제 11-8

※ 교재 [예제 11-08]

(1) 현대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 1대를 3,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차) 차량운반구 3,000,000 (대) 미 지 급 금 3,000,000

(2) 위 미지급금의 약속기일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차) 미 지 급 금 3,000,000 (대) 당 좌 예 금 3,000,000⁴⁾

(3) 장부가액 450,000원의 유희토지를 400,0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차) {	미 수 금	400,000	(대) 토 지	45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		

(4) 위 미수금을 월말에 수표로 받아 곧 당좌예입하다.

(차) 당 좌 예 금 400,000 (대) 미 수 금 400,000

※ **미수금과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즉 기업의 주요 영업목적 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수취채권을 미수금이라고 하며, 금융자산으로서 자산계정이다. 미지급금은 동 거래의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금융부채이다.

선급금과 선수금

예제 11-10

※ 교재 [예제 11-10]

(1) 종로상사에 상품 1,000,000원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수표발행하여 지급하다.

(차) 선 급 금 100,000 (대) 당 좌 예 금 100,000

(2) 위 주문품이 도착되어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매 입	1,000,000	(대) { 선 급 금	100,000
		현 금	900,000

(3) 종로상사는 마포상사에 상품 1,000,000원을 판매계약하고, 계약금으로 현금 100,000원을 받다.

(차) 현 금 100,000 (대) 선 수 금 100,000

(4) 위 계약상품을 납품하고 잔금을 받다.

(차) { 현 금	900,000	(대) 매 출	1,000,000
선 수 금	100,000		

※ **선급금**과 **선수금**: 일반적 상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기로[제공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또는 착수금으로 일부의 금액을 미리 지급[수취]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채무]이다. 선급금[선수금]은 약정일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제공하면] 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로 대체된다. 선급금과 선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이 결제수단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예제 11-11

※ 교재 [예제 11-11]

(1) 종업원 김군에게 부산출장을 명령하고 여비 50,000원을 수표발행하여 지급하다.

(차) 가지급금 50,000 (대) 당좌예금 50,000

(2) 부산출장중인 김군으로부터 1,000,000원의 송금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

(차) 현 금 1,000,000 (대) 가 수 금 1,000,000

(3) 김군이 돌아와 여비를 정산한 결과 현금 4,000원이 남아서 반환받다.

(차) {	여비교통비	46,000	(대) 가지급금	50,000
	현 금	4,000		

(4) 부산에서 송금된 1,000,000원은 부산주식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이 판명되었다.

(차) 가 수 금 1,000,000 (대) 매출채권 1,000,000

※ **가지급금과 가수금**: 현금의 지출이나 수입은 이루어졌으나 처리할 계정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에 일시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정으로, 가지급금 계정은 자산계정이고 가수금 계정은 부채계정이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은 내역이 확인될 때까지 설정하는 가계정이므로 내역이 확인되면 해당계정에 대체하며, 결산일까지는 반드시 그 내역을 확인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예수금

예제 11-12

(1) 서울상사는 A종업원에게 5월분 급료지급시에 상환받기로 하고 200,000원을 가불해 주다.

(차) 단기대여금 200,000 (대) 현 금 200,000

(2) 5월분 급료 1,000,000원을 A종업원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위에서 가불한 금액과 갑종근로소득세 50,000원과 의료보험료 10,000원, 그리고 주민세 40,000원을 원천공제한 후의 잔액을 현금지급하다.

(차) 급 여 1,000,000 (대) {	단 기 대 여 금	200,000
	소 득 세 예 수 금	50,000
	(갑근세예수금)	
	의 료 보 험 예 수 금	10,000
	(보 험 료 예 수 금)	
	주 민 세 예 수 금	40,000
	현 금	700,000

※ 교재 [예제 11-12]

※ **예수금**: 종업원 또는 거래처가 제3자(국세청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업이 일시적으로 대신 수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채계정인 예수금계정으로 처리한다. 예수금계정은 가수금과는 달리 임시계정이 아니며, 예수된 금액을 해당수취기관에 납부하였을 때 예수금을 감소시킨다.

상품권



구 분	회계처리
•상품권 발행[“판매”]시	•“판매”된 상품권의 액면금액을 상품권선수금계정의 대변에 기록 •할인금액(액면금액과 현금수령액의 차이)은 상품권할인액계정의 차변에 기록
•상품권 회수시	•상품권 회수시 상품과 교환된 금액만을 매출계정의 대변에 기록 •회수된 상품권 액면금액에 대해 처리했던 상품권할인액을 매출에누리계정에 대체
•유효기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상품권에 명시된 환불 비율에 따라(if any)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여 잡이익계정 [또는 기간경과이익계정]에 대변기입
•소멸시효 완성시	•상법(제64조)상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잔액을 전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여 잡이익계정[또는 기간경과이익계정]에 대변기입 (단, 이 때 관련 상품권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상품권 (예제)

예제 11-15

- (1) 신세계백화점에서는 1권당 10,000원인 상품권 100매를 9,000원씩에 발행하고 현금을 받다(상품권 발행시).

(차) {	현금	900,000	(대) {	상품권선수금	1,000,000
	상품권할인액	100,000*			
* (10,000 - 9,000) × 100매					

- (2) 상품권소지자에 의하여 상품과 교환된 상품권은 40매이며, 거스름돈으로 환급한 금액이 10,000원이다(상품 판매시).

(차) {	상품권선수금*	400,000	(대) {	매출	390,000
	매출에누리**	40,000*		현금	10,000
				상품권할인액	40,000**
* 40매 × 10,000					
** (10,000 - 9,000) × 40매					

- (3) 나머지 상품권이 회수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하다(단, 소멸시효 전까지 청구시 액면 금액의 60%를 반환 명시): (일자) (차) 상품권선수금 240,000 (대) 잡이익 240,000*
- (4) 유효기간이 경과된 미회수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다.

(일자) (차) 상품권선수금	360,000	(대) 상품권할인액	60,000
		잡이익	300,000

*잡이익 계정 또는 기간경과이익 계정 사용

※ 교재 [예제 11-15]+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기업이 영업의 주목적인 일반적 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을 매출채권이라 하고, 신용[외상]으로 매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매입채무라고 함
- 이 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계정을 운용할 수 있으나, 결산시 재무제표에는 각각 받을어음과 지급어음과 통합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로 보고함. 또한 각 거래처별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장부인 매출처원장과 매입처원장을 사용할 수 있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분개 예시:

(09/09) 경영(주)는 경제(주)에 상품 30,000원을 신용 판매하다.

(10/10) 경영(주)는 경제(주)에 대한 매출채권 중 2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S1] 경영(주)의 회계처리

(09/09)	(차)	매출채권	30,000	(대)	매출	30,000
(10/10)	(차)	현금	20,000	(대)	매출채권	20,000

[B2] 경제(주)의 회계처리

(09/09)	(차)	매입	30,000	(대)	매입채무	30,000
(10/10)	(차)	매입채무	20,000	(대)	현금	20,000